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5타경100962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2. 10.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김재철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3.10.17.자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5. 6. 19.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 증 금	차 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김지훈	403호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주택임 차권자	2020.05.30	267,000,000		2020.05.29	2020.04.16(2 2022.05.20)		
주택도 시보증 공사(임 차인 김지훈)	전부	권리신고	주거 임차인	2020.05.30.- 2024.05.29.	267,000,000원( 2022.5.10.금 12,000,000원 증액)		2020.05.29.	2020.04.16.( 255,000,000 원), 2022.05.20.( 증액된 1200만원)	2025.6.11.	
<b>&lt;비고&gt;</b>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 김지훈):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이고, 임차권자 김지훈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승계인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b>비고란</b>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1.16.) 가 제출되었음.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100962

### [물건 1]

####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6-27

그린힐빌리지

에이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58-10

철근콘크리트구조 스투브지붕

5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층 19.95㎡

2층 116.74㎡

3층 174㎡

4층 174㎡

5층 174㎡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4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7.26㎡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6-27

대 443㎡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443분의 45.3828

감정평가액

275,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3.17

275,000,000

27,500,000

2회

2026.04.21

220,000,000

22,000,000

3회

2026.06.02

176,000,000

17,600,000

4회

2026.07.07

140,800,000

14,080,000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1.16.)가 제출되었음.